

**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
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**

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입신고 면제조항에 삭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
수출국에서 이미 선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
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2]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1. ~ 25. (생략) <u><신 설></u>	[별표2]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1. ~ 25. (생략) 26. 폐지류
비고	비고
1. ~ 2. 생략 3.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신고가 면제되는 <u>폐지 및 고철</u> (<u>비철금속을 포함한다.</u>)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.(단,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, 이물질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.)	1. ~ 2. 생략 3.<u>고철</u> <u>(비철금속을 포함한다.)</u>....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입신고 면제조항 삭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국에서 이미 선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